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10-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5가단52749 손해배상(기)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지 담당변호사 강구현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정영민
변 론 종 결	2026. 8. 18.
판 결 선 고	2026. 10.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1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10-21

가. 원고는 2022. 10. 17.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안전밸브 점검, 부등침하 점검 등의 업무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2023. 10. 5.경 원고에게 고용되어 안전밸브 점검 등의 일을 하다가 2024. 12. 31.경 퇴사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평택경찰서에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견적서 파일 등을 삭제하여 업무방해, C의 상호명이 주식회사 D로 변경된 것처럼 C의 업무 상대방인 주식회사 E의 담당자를 속여 용역비를 지급받아 업무상배임,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블로그에 원고 소유 현장사진 이미지를 무단으로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저작권법위반을 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평택경찰서는 2025. 10. 1. '원고는 피고가 삭제하였다는 파일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며, 원고가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각 혐의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담당검사는 2025. 12. 4. 위 판단에 대하여 보완수사를 요구하였으나 평택경찰서는 다시 불송치 결정을 하여 원고가 이에 대해 이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사업장에서 퇴사하면서 PC에 보관된 견적서 파일 등을 고의로 삭제하여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는 주식회사 E에 'C' 상호의 견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이후 마치 C 사업자가 용역을 제출하는 것처럼 안전밸브 점검 등의 용역을 제공한 다음 사업자가 변경되었다고 하고 자신이 개설한 주식회사 D 상호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에 따른 용역대금을 수령하는 등 원고의 용역기회를 침탈하여 피고는 주식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10-21

사 F로부터 받은 용역대금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피고는 원고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의 블로그에 게재된 사진들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주식회사 D 내지 안전밸브, 부등침하 등의 글자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편집하여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업무를 방해받거나 영업기회를 침탈당하여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 74,907,000원, 위자료 1,000만 원의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명시적 일부 청구로서 3,100만 원의 배상을 청구한다.

3. 판단

갑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 위 각 증거,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법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만 알 수 있을 따름이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청구와 같은 취지로 피고를 업무방해, 업무상배임,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평택경찰서가 2025. 10. 1. 모두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보완수사 요구에도 또다시 불송치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②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컴퓨터에 저장된 어떠한 파일을,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삭제하였는지 특정할 수 없고, 그 삭제로 인하여 해당 파일이 복구되지 않거나 원고의 업무수행이 실제로 곤란하게 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하다. 설령 피고가 일부 파일을 삭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복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10-21

구하거나 다시 작성하는데 소요된 비용, 그로 인하여 실제 발생한 영업상 손실 등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오히려 피고는 퇴사 이후로도 원고의 업무에 협조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는 퇴사 직후 주식회사 F 담당자로부터 검사 관련 연락을 받고서 주식회사 F에 주식회사 D 명의로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C에서 주식회사 D로 변경되는 사실을 알리기도 하는 등 당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주식회사 F에 대하여 원고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피고와 거래하도록 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알리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피고가 원고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F로부터 연락을 받고서 피고 회사 명의로 견적서를 제출하고 용역을 수행한 행위가 원고에 대한 위법한 영업기회 침탈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④ 원고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진들이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별개로 원고가 그 사진의 저작권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피고의 사용행위에 관하여 원고의 저작권 침해 주장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사진의 촬영자, 촬영경위, 원고와 촬영자 사이의 권리귀속 관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사진들의 저작권이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⑤ 원고는 피고가 파일 삭제 기타 방법 또는 원고의 견적서를 참고하여 공급가를 파악하고 원고의 영업기회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가 다수 거래처로부터 용역을 수주하여 원고의 업무를 방해받거나 영업기회를 침탈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10-21

고의 막연한 추정에 근거할 뿐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한편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수행한 각 용역이 원고와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체결될 것이 확정적 또는 상당한 개연성을 가진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수행한 각 용역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의 구체적인 산정 근거도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의 위법행위 자체가 증명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별도로 위자료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대원